

의안번호	2212322
의 퇴 인	허성무 의원
회 답 일	2026. 1. 16.
추계번호	25A4544
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①사업재편 관련 심층조사를 수행하고(안 제8조 제2항 신설 등), ②지역별 사업재편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는 경우(안 제8조의3제1항) 소요되는 비용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5억 4,000만원(연평균 7억 500만원)으로 추계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사업재편 관련 심층조사 수행 (안 제8조제2항 신설 및 제36조제1항제1호)	15	15	15	15	15	75	15
지역별 사업재편협의회 구성·운영 (안 제8조의3제1항)	694	694	694	694	694	3,468	694
합계	705	705	705	705	705	3,540	705

주: 1.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2.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제2항 신설 (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¹⁾ 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	안 제36조제1항제1호 (업무의 위탁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심층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	
2	안 제8조의3제1항 (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)	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별 선도기업, 지역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지역별 사업재편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, 펀드 조성,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9조 (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)	제2항제4호 ²⁾ 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5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함	의무규정

1) 안 제8조(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·업종별·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·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·분석(이하 “기초조사”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
2)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

제9조(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) ①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(이하 “신청기업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재편의 필요성

2.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,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. 다만, 제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탄소중립활동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료

가.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: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

나.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: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내용이 미래 사업재편임을 입증하는 자료
다.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: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

4. 사업재편의 추진내용과 사업재편계획기간

5.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

6. 사업재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관련 서류(...)

7.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

8.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및 투자 계획

9. 사업재편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

10. 사업재편을 위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등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 중 양도차익의 사용계획

11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제2항 신설 (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)	○	—
	안 제36조제1항제1호 (업무의 위탁)		
2	안 제8조의3제1항 (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)	○	—
3	안 제9조 (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)	×	사업재편계획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경우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 지원이 연장되어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³⁾ 이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려면 향후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수와 각 사업에 대한 기업별 평균 수혜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하나,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참고로, 2025년 12월 30일 기준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총 365개이며,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용자보증 우대, 컨설팅, 고용안정, 세금 감면 등 지원이 적용되고 있음 * [참고자료 1]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현황 * [참고자료 2] 사업재편 승인기업 지원 내용

- 3) 현행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안정(제4조제1항제1호), 지역경제 활력 회복(같은 조 제1항제3호)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에 한함.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미래 사업재편 기업(제4조제1항제2호)의 경우 현재도 사업재편계획기간이 5년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변동이 없음

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4조(적용범위)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. 1. 다음 각 목에 따른 <u>공급안정</u>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가.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나.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,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(...)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2. 미래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관정위원회(...)로부터 (...) 판정을 받은 기업 3.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<u>지역경제 활력 회복</u>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(...) 제9조(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)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. 1.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: <u>3년</u> 2.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: <u>5년</u>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, 본 추계에서는 ①사업재편 관련 심층조사 수행(안 제8조제2항 신설 등), ②지역별 사업재편협의회 구성·운영(안 제8조의3제1항)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
 - 개정안에 따른 심층조사 및 지역별 사업재편협의회(이하 “지역협의회”) 구성 주체가 정부이므로, 추계비용은 전액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
- (안 제8조제2항 등) 심층조사의 경우 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위탁사업비 또는 연구용역비를 추계
 - 소요 비용은 산업통상부가 최근 5년 동안(2021~2025년) 수행한 사업재편 관련 심층조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 - － 개정안은 기초조사를 통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, 선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통상부가 수행한 기존 심층조사의 성격과는 일부 다를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가용 자료에 한계가 있고 기존 과제 중 일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구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일부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심층조사 수행 내역을 활용하는 것으로 함
 - － 심층조사 내역 중 산업연구원이 수행한 일부 과제의 경우 기존 사업재편 지원사업⁴⁾에 편성된 예산을 재원으로 추진되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, 현 시점에서 심층조사의 수행 방법을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수행 방법과 재원, 수행기관 등을 구분하지 않고 최근 5년간 평균 비용만큼이 추계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- 심층조사는 매년 수행되며, 추계기간 동안 소요 금액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

4) 사업명: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(기후대응기금, 6332-403)

[표 2] 심층조사 수행 내역(2021~2025년)

구분	수행연도	조사명(과제명)	소요예산 (천원)	수행기관
1	2022	심층조사 산업과 기업의 부실징후 변화와 시사점	—	산업연구원
2	2023	심층조사 기활법 개정 제도 및 운영 개선사항 발굴 및 연구	2,000	한국개발연구원
3	2023	심층조사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효과성 실태조사	30,000	리서치앤리서치
4	2024	심층조사 선제적 사업재편제도의 효과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	—	산업연구원
5	2024	심층조사 기업활력법 과잉공급 요건 검토와 개선방향	—	
6	2025	심층조사 기업활력법 추진성과와 발전방향	—	
7	2025	심층조사 주력산업 경쟁력제고 및 신산업정책 필요성과 향후과제	—	
8	2025	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선 방안 연구 * 추진중, `25.12~`26.3	41,000	

자료: 산업통상부

- (안 제8조의3제1항) 지역협의회 구성·운영 비용으로는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비용을 추계하며,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현재 모든 시·도에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이 있다는 점에서, 개정안에 따른 지역협의회는 17개 시·도별로 1개씩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
 - * [참고자료 1]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현황
 - 지역협의회 위원 정수는 20명, 이 중 수당 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17명으로 가정하고, 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으로 하며(연 6회),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을 준용하여 40만원으로 가정
 - 개정안은 지역협의회 구성 단위, 위원 정수 및 위원 자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나, 개정안과 유사하게 중앙 및 지역협의회 구성 근거를 각각 두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⁵⁾의 사례*를

5)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

참고하여 위원 정수는 20명으로 함

* 해당 협의회는 경우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 위원의 최대 정수를 동일하게 30명으로 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지역협의회도 현행법 제8조의26)에 따른 사업재편지원협의회(중앙)와 마찬가지로 위원 정수를 20명으로 가정

－ 위촉직 위원 정수(3명) 및 회의 횟수(연 6회)의 경우, 2022년 당시 서울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*의 구성 및 회의 내역을 참고하여 가정

* 해당 협의회는 공무원인 위원 6명⁷⁾, 위촉직 위원 16명으로 구성되었는데, 이 중 사업재편과 연관이 있는 분야를 참고하여 위원 3명[위원장(공무원)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고용노동청]이 지역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

*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보도자료를 참고할 때 2022년 해당 협의회는 총 6회 개최되었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지역협의회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함

－ 회의 수당의 경우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⁸⁾에 따라 당연직

제10조(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) 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⑥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육성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1조(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(이하 “지원협의회”라 한다)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둔다.

②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6)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

제8조의2(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)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,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 기업 발굴, 펀드 조성,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.

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

제8조의2(사업재편지원협의회)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지원협의회는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·협회·단체, 정책금융기관, 시중은행 등의 임직원 및 사업재편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7)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(위원장),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장,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,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,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장,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장

8)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(기획재정부)

○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0,000원내(서면심사 150,000원내)에서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0,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·식비·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(220목) 또는 일반수용비(210-01목)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
－ 다만,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.

－ 또한,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·현지조사·기술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료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(210-01목)로 지급할 수 있다.

위원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, 장시간 회의에 따른 참석 수당 가산과 안전 검토 수당 등을 고려하여 단가를 40만원으로 함

-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수,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-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, 법률 개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심층조사 수행(안 제8조제2항 신설 및 제36조제1항제1호)

- 개정안에 따른 심층조사 비용은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(2021~2025년) 연평균 심층조사 수행 비용을 준용하여 산출하며, 추계기간(2027~2031년) 동안 국가재정으로 7,500만원(연평균 1,500만원)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
 - 추계기간 동안 매년 1,500만원

[표 3] 심층조사 수행 비용 추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사업재편 관련 심층조사 수행 (안 제8조제2항 신설 및 제36조제1항제1호)	15	15	15	15	15	75	1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지역별 사업재편협의회 구성·운영(안 제8조의3제1항)

- 지역협의회 구성·운영 비용은 각 시·도별 위촉직 위원의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으로 총 34억 6,800만원(연평균 6억 9,400만원)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

- 위촉직 위원 수(17명) × 회의 횟수(6회) × 수당 단가(40만원) × 시·도(17개)
= 연 6억 9,400만원

[표 4] 지역별 사업재편협의회 구성·운영 비용 추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지역별 사업재편협의회 구성·운영 (안 제8조의3제1항)	694	694	694	694	694	3,468	69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심층조사 및 지역협의회 구성·운영 비용은 유사한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실제 재정소요는 추계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 1]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현황

(단위: 개)

시·도	기업 수
서울	39
부산	13
대구	37
인천	17
광주	8
대전	12
울산	14
세종	3
경기	109
강원	7
충북	6
충남	21
전북	4
전남	9
경북	42
경남	22
제주	2
합계	365

주: 2025.12.31. 기준
자료: 산업통상부

[참고자료 2] 사업재편 승인기업 지원 내용

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지원 내용

구 분	주요 내용
❶ R&D	· 정부 R&D사업 우대가점 부여, 중소·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(중소2, 중견4)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, 기술료 납부유예 등
❷ 금융	· (우대지원) 산은·기은, 기보·신보 등 융자·보증 시 금리·요율 등 우대 * (산은) 최대 △1.2%p, (기은) 최대 △0.5%p, (기보) △0.2%p, (신보) 보증비율 95% 적용 및 보증료율 최대 0.5%p 차감 등 ·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(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→ 축소가능) ·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지원 비율 2%p 가산 지원 · 자산매각 지원(S&LB 방식으로 캠프에서 유동성 공급, '23년 500억 규모)
❸ 컨설팅	· 사업재편 이행지원 및 애로해소 컨설팅 -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이행과 인센티브 활용을 지원하고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사업재편의 목표를 달성 지원 * (지원규모) '25년 기준, 기업별 1,100만원 이내
❺ 세제	· (법인세) -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, 합병시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 이연 등 - 이월결손금 100% 공제(대기업도 적용) · (등록면허세) 합병·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% 감면
❻ 입지특례	·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→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* 양도차익의 70%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적용
❼ 고용안정	·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· 산업·일자리전환 지원금
❽ 정부사업 우대	· 국내복귀투자보조금 타당성 평가 시 가점 우대(2점)
❹ 상법 절차 간소화	· (소규모분할) 자산규모 10% 이하 사업부문 물적분할시 절차 완화 * 이사회 결의로 갈음(주주총회 생략) · (주총 소집기간 단축) 7영업일 (상법: 2주) · (채권자 보호절차 단축) 10일 (상법: 1개월) · (주주: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) 10일 (상법: 20일) · (회사: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) (상장회사) 3개월 (상법: 1개월), (비상장회사) 6개월 (상법: 2개월)
❿ 공정거래법 규제유예	· 지주회사·자회사·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: 3년(공정거래법: 1~2년) · 상호·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: 1년 (공정거래법: 6개월) ·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: 3년 (공정거래법: 2년)

자료 : 산업통상부, 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사업재편 기업 종합지원 방안 가이드(2026)」